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5.4.21.(화) 15:30

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신선기

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이양섭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4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4월 14일

3. 제안 이유

- 농수산물식품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협의회 등 조직 전문화와 수출 우수기관, 단체 등에 대한 시상제도를 신설하여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충북경제 4%를 조기실현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변경(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→ 충청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)
- 나. 농수산물식품산업의 수출 촉진 활성화를 위해 목적 및 정의 관련 조문 개정(안 제1조~제2조)
- 다. 현행 농수산물을 “농수산물식품”으로 확대하고 체계화함(안 제1조~제1조)
- 라.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시상제도의 확대(안 제10조)
- 마. 농수산물식품수출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제반 규정의 구체화(안 제11조~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'은 도내 농수산물식품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협의회 등 조직의 전문화와 수출 우수기관, 단체 등에 대한 시상제도를 신설하여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충북경제 4%를 조기실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.